

## 답 변 서

- 사 건 2000가단0000 손해배상(자)
- 원 고 ○○○
- 피 고 〈〉〉보험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 ○. ○. ○○:○○경 소외 ◈◈◈ 운전의 경남 ○고○○○○호 승용차가 ○○시 ○○구 ○○길 소재 ○○숯불갈비 앞에서 공사용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원고에게 튕기면서 다발성 좌상, 미골탈구,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 채무의 부존재

- 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장해를 남기는 상해가 아니라 경미한 좌상 에 불과하였습니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고의 치료요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인 치료비 전액 금 3,133,97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추후 신체감정 및 형사기록이 송부되는 대로 원고가 주장하고 함께 사고발생 경위,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를 정입니다)

#### 3. 결 어

피고는 그 지급책임이 있는 범위내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 0. 0.

위 피고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COP N CHO'DE	屋구조공E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대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	
	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	
	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	
	역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	
	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	
	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	
	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	
	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답변서